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새롭게 나아갈 대한민국 정부브랜드 새롭게 나은 정부

2019년 8월 13 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8. 12 .(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9. 8. 12 . (월)	담당부서	해외투자과
담당과장	최우혁 과장(044-203-4090)	담 당 자	진성익 사무관(044-203-4093)

"해외진출기업 유턴(국내복귀) 쉬워진다"

- 해외-국내 동일제품 생산기준, 해외 사업장 축소 기준 완화
- 동 내용의 유턴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, 8.13일 시행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성윤모)는 **8.13(화) 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**(이하 「유턴법」) **시행령」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는 요건*이 대폭 완화된다**고 밝혔다.(시행규칙 개정안은 8.16(금) 시행 예정)

* 유턴기업 요건 : ①해외 사업장 2년 이상 운영, ②제조사업장 운영, ③ 해외-국내 동일제품 생산(시행령), ④ 해외사업장 청산/양도/축소(시행규칙), ⑤국내에 신·증설

○ **유턴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으로** 유턴기업 선정을 위한 **해외-국내 동일제품 생산기준**(시행령), **해외사업장 축소 기준**(시행규칙)이 완화된다.

<유턴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 내용>

구분	기존	개정후
생산제품 범위 확대	해외-국내 사업장 생산품 "한국표준산업분류" 상 **세분류**(4단위) 일치	**소분류**(3단위) 일치
축소요건 완화	**해외사업장 생산량 50%이상 축소**	**생산량 25% 이상 축소**

□ 한편, **정부로부터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** 법인세·관세 **세제감면, 입지·설비보조금, 고용보조금** 등을 **지원 받을 수 있다.**

<유턴기업 선정 시 주요 지원 내용>

○ **조세 감면** : 법인세·소득세(최대 7년간50~100%), 관세(신규·중고 설비 도입시)
*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법상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할 필요
○ **지방투자보조금** : 입지(분양가·지가의 9~50%), 설비(투자금액의 11~34%)
○ **고용보조금**(중견 · 중소) : 1인당 최대 720만원, 2년간, 기업당 최대 100명 한도
○ **입지 지원** : 산업단지 입주 희망시 입주 우선권 부여 등
○ **인력 지원** : 외국인 전문인력(E-7) 비자 지원,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한도 우대(최대 20%) 등

○ 이번 **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은** 작년 **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**('18.11.29)**를 통해** 발표한 **"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*"의 후속 조치 중 하나이다.**

<금번 개정 주요 내용>

1 **(해외-국내 동일제품 생산)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국내복귀 후 생산하는 제품**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**동일한 세분류**(4단위)에 속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, **앞으로는 동일한 소분류**(3단위)**에 속해도 가능**하게 된다.**(시행령)**

○ 이에 따라 **해외에서 유선전화**(유선통신장비, 2641)를 만들던 기업이 **국내 복귀하여 핸드폰 부품**(무선통신장비, 2642)을 제조하더라도 **모두 통신장비 제조업**(264)으로 보아 **유턴기업으로 선정 받을 수 있게 된다.**

* 소분류 : 유선통신장비제조업(2641), 방송 및 무선통신장비 제조업(2642) / 세분류 :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(264)

○ 유턴기업이 **생산품목을 다변화 할 수 있도록 허용**함으로써 보다 **많은 기업이 국내복귀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**된다.

2 **(해외사업장 축소) "해외사업장 축소기준"도 완화**된다. 따라서 지금까지는 해외사업장 생산량을 50% 이상 축소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았으나, 앞으로는 **25%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**받을 수 있다. **(시행규칙)**

○ **과거에는 해외사업장 축소 후 국내 복귀하는 경우** 해외사업장 생산량의 **50% 이상을 축소해야하기 때문에 축소 후 복귀 기업이 많지 않았던 것이 현실**이다.

○ 금번 개정으로 기업의 해외 사업장 축소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**해외사업장을 축소하고 국내에 신·증설 투자를 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.**

□ **산업부**는 이번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안의 시행으로 보다 많은 해외 진출기업들이 국내에 복귀하여 유턴투자를 할 것으로 보고, **적극적 유치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.**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진성익 사무관(☎ 044-203-409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후속조치 현황

<table>
<tr><th></th><th>항목</th><th>내용</th><th>진행상황</th></tr>
<tr><td rowspan="3">❶
대상
확대</td><td>업종확대</td><td>제조업 + 지식서비스업 추가</td><td>유턴법 개정안
상임위 상정('19.3.12)</td></tr>
<tr><td>생산제품
범위 확대</td><td>세분류(4단위) → 소분류(3단위)로 동일성기준 완화</td><td><금번개정 내용>
유턴법 시행령
8.13 시행</td></tr>
<tr><td>축소요건 완화</td><td>해외사업장 50% → 25% 이상 축소로 완화</td><td><금번개정 내용>
유턴법 시행규칙
8.16 시행예정</td></tr>
<tr><td rowspan="6">❷
인센티브
강화</td><td>입지·설비
보조금</td><td>· 지원요건 완화(상시고용 30인 → 20인)
· 타당성평가 기준 보완
· 지급대상 확대(중소·중견 → 대기업)</td><td>보조금 고시
개정 완료</td></tr>
<tr><td>입지·설비보조금
담보부담 완화</td><td>담보수단 다양화
* 은행권에서 현금예치 요구 없는 지급보증서 발급</td><td>산업은행 지급보증
상품 출시
(현금예치 無, 대신 신용도 낮은 기업(BBB이하) 보증료율 서울보증보험에 비해↑)</td></tr>
<tr><td>고용
보조금</td><td>지원기간 확대 (1년→2년)</td><td>고용창출장려보조금
개정 완료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세제
감면</td><td>법인세, 관세 감면 대상에 대기업 포함
<table>
<tr><th></th><th colspan="2">대기업</th><th colspan="2">중소·중견기업</th></tr>
<tr><th></th><th>청산양도</th><th>축소</th><th>청산양도</th><th>축소</th></tr>
<tr><td>법인세</td><td>O</td><td>×→O</td><td>O</td><td>O</td></tr>
<tr><td>관세</td><td>×→O</td><td>×→O</td><td>O</td><td>O</td></tr>
</table></td><td>조특법 개정
완료('18.12.24)</td></tr>
<tr><td>농어촌특별세(조세감면액의 20%) 비과세</td><td>농어촌특별세법
시행령 개정 완료</td></tr>
<tr><td>입지 지원</td><td>국·공유지 사용 특례 등</td><td>유턴법 개정안 상임위
상정('19.3.12),
국유재산특례제한법
개정안 상정('18.3.26)</td></tr>
<tr><td>정책사업
우대</td><td>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(중기부), 산업구조고도화 지원프로그램(금융위) 우선 지원 등</td><td>중기부·금융위 등에서
시행 중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❸
지원체계
간소화</td><td>절차 간소화</td><td>각 지원제도 신청·심사 간소화</td><td>유턴법 개정안
상임위 상정('19.3.12)</td></tr>
<tr><td>신청기한
간소화</td><td>보조금 신청 기한 간소화(3개 폐지, 3개 연장)</td><td>유턴법 개정후
시행규칙
2차 개정에 반영</td></tr>
</table>